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학생자치단체 선거 규약

제1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구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 각 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를 주관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과 학생복지위원회의 선거는 그 과정에 참관하며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2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과 및 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도한다.

제2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2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 일전까지 선거인명부 최종본을 구비한다.

1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호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3호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회칙 및 세칙을 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선관위의 별다른 통보 없을 시 직전 선거 세칙에 의거한다)

제4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규약을 어긴 후보자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일한 유권 해석 기관이다.

제6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제3조 (개회 및 의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선거일 공고 및 비용)

제1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0일 이전에 모든 선거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선거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하며 비용의 규모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예산에 선거비를 반영한다.

2호 각 학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와 기구의 예산에서 선거비를 반영한다.

제5조 (입후보자 등록)

제1항 총학생회장단 후보자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등록원서 1 통.

2호 회원 50 인 이상의 추천서.

3호 재학증명서 1 통.

4호 성적증명서 1 통.

5호 소견발표문 1 통.

6호 합동소견발표 시 찬조연사 1 인의 동의서.

7호 참관인 4 인의 동의서.

제2항 총여학생회장단 후보자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등록원서 1 통.

2호 회원 50 인 이상의 추천서.

3호 재학증명서 1 통.

4호 성적증명서 1 통.

5호 소견발표문 1 통.

6호 합동소견발표 시 찬조연사 1 인의 동의서.

7호 참관인 4 인의 동의서.

제3항 각 학과 후보자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등록원서 1 통.

2호 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서.

3호 재학증명서 1 통.

4호 성적증명서 1 통.

5호 소견발표문 1 통.

6호 합동소견발표 시 찬조연사 1 인의 동의서.

7호 참관인 4 인의 동의서.

제4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선거 5 일전까지 입후보자의 명단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상의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등록 마감 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제2장 선거 운동

제6조 (선거운동 시작) 모든 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 교육 참여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자교육)

제1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설명회를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후보자교육은 선거시행세칙 및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설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벽보) 선거운동을 위한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하지 아니한 벽보는 모두 불법으로 철거한다.

제9조 (합동소견발표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와 본교 학생들을 위하여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 (총학 합동소견발표회) 총학생회장단 선거 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 회 이내 의 전체공청회를 개최한다.

제2항 (기구 및 학과 합동소견발표회) 기구 및 학과 선거 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1회 이내의 전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3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청회 일시, 장소 등을 개최 3 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합동연설회의 연설 순서는 연설회마다 당일 결정하고 연설회 시작 10 분전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 순서를 마지막으로 연기한 뒤 불참 시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항 기구 및 학과 후보들은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이를 방해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이를 어길 시에는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페널티를 받는다.)
- 제6항 모든 후보들은 공청회 끝까지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이행 시 세칙에 의거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 제7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 하거나 회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회장 밖으로 퇴장 시킬 수 있다.
- 제8항 (수업 외 유세) 유세 기간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 수업 외 유세 신청을 심의하여 허락할수 있다.

제10조 (선거본부) 각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학내 일정장소에 한하여 선거 본부를 둘 수 있다.

제11조 선거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에 부적합한 행위,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협박, 납치행위, 폭행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2조 각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대변인 1 인씩을 두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투표, 개표 및 당선공고

제13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재학생이며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만 부여된다.

제14조 (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 명부에 본인 여부를 대조 날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표소에서 교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지정된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제15조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운전면허증으로 한다.

제16조 (무효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제1항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제2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제3항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제4항 2 인 이상의 입후보자에 기표한 것.

제5항 기타 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 (재투표) 경선 시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0 일 이내에 재투표를 시행한다.(단, 재 투표율은 50%를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개표) 개표는 반드시 중앙 선거관리위원 3 인 이상이 관리한다.

제19조 (참관인)

제1항 참관인은 각 입후보자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에 참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다.

제2항 투표구내에서는 참관인 이외의 사람, 입후보자나 기타의 선거운동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 참관인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4항 참관인이 총학생회내의 기구나 학회, 동아리의 임원일 경우 사퇴해야 한다.

제5항 참관인 중 1 인은 항시 해당 투표소에 있어야 한다.

제6항 참관인은 투표시작 시간부터 당선공고 전까지 활동한다.

제20조 (당선공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후 2 일 이내에 당선공고를 해야 한다.

제21조 (선거과정 및 결과 이의)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공고 후 2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로 한다.

제3항 이의제기 처리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제4항 모든 이의제기의 처리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항 이의 제기 이후 최종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3일로 한다.

제6항 전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22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선거공고가 나온 날부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23조 (선거 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단체의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4조 (세칙개정) 본 시행세칙은 재적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